

1. 개정이유

보조금 지원사업 성과관리 제도 도입 및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국고 보조금 신청 요건을 강화하고, 관광단지 내 설치 가능 시설범위를 확대 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국고보조금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광개발사업 대상 부지 확보 계획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계획 추가(제6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, 동조 제3항, 별지 제43호 서식 개정)
- 나.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(관광형 촬영소, 영상영관, 문학관) 확대(별표 19 개정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: 실시 예정
3) 행정규제 : 해당사항 없음

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관광자원개발사업 대상 부지 확보 계획(건설공사에 한한다)

7.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 심사 완료계획

③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경우에는 제1항
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.

별지 제43호 서식, 별표 19는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국고보조금 신청서				처리기간
				15일
신청인	①성명(대표자)		②생년월일	
	③주소	(전화 :)		
④상호(명칭)				
⑤업종				
⑥사업장소재지		(전화 :)		
⑦신청금액				
⑧거래은행				
⑨용도				
⑩신청사유				
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61조 및 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제6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자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				
※ 구비서류 1. 사업개요(건설공사인 경우 시설내용을 포함합니다) 및 효과 1부 2. 사업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1부 3. 사업공정계획 1부 4. 총사업비 및 보조금의 산출내역 1부 5. 사업의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외의 경비 조달방법 1부 6. <u>관광자원개발사업 대상 부지 확보 계획(건설공사에 한한다.) 1부</u> 7. <u>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 심사 완료계획 1부</u>				수수료 없음

[별표 19] <개정 2026. 00. 00.>

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(제60조제2항 관련)

시설지구	설치할 수 있는 시설
공공편익 시설지구	도로, 주차장, 관리사무소, 안내시설, 광장, 정류장, 공중화장실, 금융기관, 관공서, 폐기물처리시설, 오수처리시설, 상하수도시설, 그 밖에 공공의 편익시설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관광지등의 기반이 되는 시설
숙박시설 지구	「공중위생관리법」 및 이 법에 따른 숙박시설, 그 밖에 관광객의 숙박과 체재에 적합한 시설
상가시설 지구	판매시설,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업소,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른 업소(숙박업은 제외한다), 사진관, 그 밖의 물품이나 음식 등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
관광휴양 ·오락시설 지구	1. 휴양·문화시설: 공원, 정자, 전망대, 조경휴게소, 의료시설, 노인시설, 삼림욕장, 자연휴양림, 연수원, 야영장, 온천장, 보트장, 유람선터미널, 낚시터, 청소년수련시설, 공연장, 영화상영관 , 관광형 촬영소 , 식물원, 동물원, 박물관, 미술관, 수족관, 문화원, 교양관, 도서관, 문학관 , 자연학습장, 과학관, 국제회의장, 농·어촌휴양시설, 그 밖에 휴양과 교육·문화와 관련된 시설 2. 운동·오락시설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육시설, 이 법에 따른 테마파크,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게임제공업소, 케이블카(리프트카), 수렵장, 어린이놀이터, 무도장, 그 밖의 운동과 놀이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람하기에 적합한 시설
복합시설지구	숙박시설지구, 상가시설지구, 관광휴양·오락시설지구 또는 기타시설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
기타시설 지구	위의 지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시설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6조(국고보조금의 신청) ① 영 제61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국고보 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~ 5. (생략) <u><신 설></u> ②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66조(국고보조금의 신청) ① 영 제61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국고보 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~ 5. (현행과 같음) <u>6. 관광자원개발사업 대상 부지 확보 계획(건설공사에 한한다.)</u> <u>7.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 심사 완료계획</u>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가 지방 자치단체 이외의 경우에는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.</u>

[별지 제43호서식] (국고보조금 신청서)

국고보조금 신청서				처리기간 15일
신 청 인	①성명(대표자)		②생년월일	
	③주 소	(전화 :)		
④상 호(명 칭)				
⑤업 종				
⑥사 업 장 소 제 지 (전화 :)				
⑦신 청 금 액				
⑧거 래 은 행				
⑨용 도				
⑩신 청 사 유				
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61조 및 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제6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자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				
※ 구비서류				수수료
1. 사업개요(건설공사인 경우 시설내용을 포함합니다) 및 효과 1부				없 음
2. 사업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1부				
3. 사업공정계획 1부				
4. 총사업비 및 보조금의 산출내역 1부				
5. 사업의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외의 경비 조달방법 1부				

[별표 19]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

시설지구	설치할 수 있는 시설
공 공 편 의 시 설 지 구	도로, 주차장, 관리사무소, 안내시설, 광장, 정류장, 공중화장실, 금융기관, 관공서, 폐기물처리시설, 오수처리시설, 상하수도시설, 그 밖에 공공의 편의시설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관광지등의 기반이 되는 시설
숙 박 시 설 지 구	「공중위생관리법」 및 이 법에 따른 숙박시설, 그 밖에 관광객의 숙박과 체재에 적합한 시설
상 가 시 설 지 구	판매시설,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업소,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른 업소(숙박업은 제외한다), 사진관, 그 밖의 물품이나 음식 등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
관광 휴양 · 오락시설 지구	1. 휴양·문화시설: 공원, 정자, 전망대, 조경휴게소, 의료시설, 노인시설, 산림욕장, 자연휴양림, 연수원, 야영장, 온천장, 보트장, 유람선터미널, 낚시터, 청소년수련시

[별지 제43호서식] (국고보조금 신청서)

국고보조금 신청서				처리기간 15일
신 청 인	①성명(대표자)		②생년월일	
	③주 소	(전화 :)		
④상 호(명 칭)				
⑤업 종				
⑥사 업 장 소 제 지 (전화 :)				
⑦신 청 금 액				
⑧거 래 은 행				
⑨용 도				
⑩신 청 사 유				
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61조 및 「관광진흥법 시행규칙」 제6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자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				
※ 구비서류				수수료
1. 사업개요(건설공사인 경우 시설내용을 포함합니다) 및 효과 1부				없 음
2. 사업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1부				
3. 사업공정계획 1부				
4. 총사업비 및 보조금의 산출내역 1부				
5. 사업의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외의 경비 조달방법 1부				
6. 관광자원개발사업 대상 부지 확보 계획(건설공사에 한한다.) 1부				
7.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 심사 완료계획 1부				

[별표 19]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

시설지구	설치할 수 있는 시설
공 공 편 의 시 설 지 구	도로, 주차장, 관리사무소, 안내시설, 광장, 정류장, 공중화장실, 금융기관, 관공서, 폐기물처리시설, 오수처리시설, 상하수도시설, 그 밖에 공공의 편의시설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관광지등의 기반이 되는 시설
숙 박 시 설 지 구	「공중위생관리법」 및 이 법에 따른 숙박시설, 그 밖에 관광객의 숙박과 체재에 적합한 시설
상 가 시 설 지 구	판매시설,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른 업소,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른 업소(숙박업은 제외한다), 사진관, 그 밖의 물품이나 음식 등을 판매하기에 적합한 시설
관광 휴양 · 오락시설 지구	1. 휴양·문화시설: 공원, 정자, 전망대, 조경휴게소, 의료시설, 노인시설, 산림욕장, 자연휴양림, 연수원, 야영장, 온천장, 보트장, 유람선터미널, 낚시터, 청소년수련시

	설, 공연장, 식물원, 동물원, 박물관, 미술관, 수족관, 문화원, 교양관, 도서관, 자연학습장, 과학관, 국제회의장, 농·어촌휴양시설, 그 밖에 휴양과 교육·문화와 관련된 시설 2. 운동·오락시설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육시설, 이법에 따른 테마파크,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게임제공업소, 케이블카(리프트카), 수렵장, 어린이놀이터, 무도장, 그 밖의 운동과 놀이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람하기에 적합한 시설	설, 공연장, <u>영화상영관</u>, <u>관광형 촬영소</u>, 식물원, 동물원, 박물관, 미술관, 수족관, 문화원, 교양관, 도서관, <u>문학관</u>, 자연학습장, 과학관, 국제회의장, 농·어촌휴양시설, 그 밖에 휴양과 교육·문화와 관련된 시설 2. 운동·오락시설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육시설, 이법에 따른 테마파크, 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게임제공업소, 케이블카(리프트카), 수렵장, 어린이놀이터, 무도장, 그 밖의 운동과 놀이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람하기에 적합한 시설
복합시설지구	숙박시설지구, 상가시설지구, 관광 휴양·오락시설지구 또는 기타시설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	숙박시설지구, 상가시설지구, 관광 휴양·오락시설지구 또는 기타시설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
기타시설지구	위의 지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시설	위의 지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시설